

電子商去來의 法的 問題

孫 京 漢*

-
- I. 序 論
 - II. 電子商去來의 概念 및 特性
 - III. 電子商去來法의 國際的 動向
 - IV. 디지털 署名과 認證機關
 - V. 電子契約
 - VI. 知的財產權의 保護와 活用
 - VII. 電子商去來와 公法的 問題
 - VIII. 新로운 法體系의 必要性
 - IX. 結 論
-

I. 序 論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로 인해서 인터넷 電子商去來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여 폭발적인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電子商去來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보고서로 “세계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계획”, “본선언” 및 “경제구조의 변화와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¹⁾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지금까지의 대면거래와 전화에 의한 격지자간 거래와 달리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의사소통없이 거래가 행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電子商去來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통적 文書의 개념, 契約의 概念, 財產權의 概念에 일대

* 法務法人 아람 代表辯護士.

1) William J. Clinton,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read.html>(July 1, 1997); 쯔네오 마츠모토,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 연구소(1997. 7).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電子署名, 認證機關, 契約法, 電子決濟 및 電子貨幣, 知的財產權 保護, 國際的 法問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와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電子商去來의 概念 및 特性

1. 電子商去來의 概念

電子商去來는 기업간 또는 기업과 고객간 거래가 전자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 활동을 포함한다.

일본 우정성의 1997년 통신백서에서는 電子商去來를 “정보통신 네트워크 내에 비즈니스 공간·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여 그 속에서 일반소비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각종 단체들의 거래(상품수발주, 결제 등)·상호교류를 실현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 ECOM에서는 電子商去來를 “네트워크 상에서 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UCC 제 2B 편에서는 電子去來(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계약성립의 일반적 단계로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전자 메시지로써 행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電子商去來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Electronic Commerce를 그렇게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電子去來가 대부분은 상거래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일 것이나 반드시 상거래에 한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거래나 순수한 민사 거래에 있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電子去來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법률 상으로는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 상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電子商去來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電子商去來의 特性

電子商去來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不特定多數人을 상대로 하는 거래

電子商去來는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하는 무차별거래라고 할 수 있다.

(2) 多數大量去來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가 정형화되고 규격화, 요식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非對面去來

거래상대방을 직접 대면함이 없이 컴퓨터를 통하여 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당사자간의 인적 신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4) 去來對象의 多樣性

물품, 서비스, 지적산물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거래대상이 된다.

(5) 컴퓨터 通信의 利用

거래의 의사표시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표의자의 동일성(identity) 확인의 필요성 및 대금결제의 정확성이 요청되게 된다.

(6) 附合去來性

소비자는 공급자(또는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래조건 즉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되어 부합거래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거래조건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7) 去來履行確保의 必要性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지급의 상환성 보장을 위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8) 國際性

電子商去來는 국경없는 거래(borderless transaction)로 이루어지므로, 국제표준의 제정 및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지정 등의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III. 電子商去來法의 國際的 動向

1. UNCITRAL 모델법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92년 EFT去來에 적용하기 위해 國際資金移替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전자 데이터의 증거 가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다른 한편 국제연합의 사회경제이사회에서 EDIFACT를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서도 EDI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UNCITRAL은 EFT 작업부회를 EDI 작업부회로 개편하고 EDI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UNCITRAL에서는 각국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전자 데이터의 증거 가치, 통관절차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UNCITRAL에서는 1993년부터 EDI 모델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6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뉴욕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모델법의 명칭을 '電子商去來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으로 개칭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본 모델법은 電子商去來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국이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본 모델법은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전자거래법의 조화 및 통일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모델법은 2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는 「電子商去來 一般」, 제 2부는 「特定領域에서의 電子商去來」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物品

「運送」이라는 제목 하에 2개조의 제1장만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전제로 기초한 것이지만, 電子商去來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電子船荷證券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대한 UNCITRAL의 의도는 모델법 전체의 체계를 고려하여, 개별영역에 관한 「제2부」를 두고,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1장으로 하여, 앞으로 다른 영역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모델법 전체의 특색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규정의 형식은 모델법이라는 이른바 소프트법(soft law)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결국 동 모델법은 각국의 국내 입법을 함에 있어 그 표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적용범위를 國際去來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각국은 그 적용을 國際去來에 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UNCITRAL이라는 기관의 성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電子商去來의 성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는 電子商去來에서 國際去來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電子商去來의 법적 장애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본 모델법은 상사거래에 적용된다. 消費者去來 및 경매 등 公共去來節次를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으나, 통관절차를 고려하면 상거래와 公去來를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다. 앞으로는 각국의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한 公去來에도 동일한 관념을 짊어넣을 필요가 있다.

또한, 消費者去來에 관해서는, 본 모델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하한 법규범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각주를 둘으로써, 消費者去來를 일률적으로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피하였다.²⁾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内田 貴, 電子商取引と法 - UNCITRAL 「電子商取引モデル法」および通商省 「電子商取引環境整備研究會中間報告」を中心として、NBL No. 600 ~ 603(1996. 9. 1. ~ 10. 15).

2. 미국의 電子商去來관련 法律

(1) 디지털 署名法

ABA의 정보안전위원회(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제적 법률전문가 및 기술전문가들과의 협력 아래 약 4년의 기간에 걸쳐서 디지털 서명법을 연구해 왔으며, 동 위원회는 1996년 8월 1일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 : 이하 ISC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서명을 한 쌍의 열쇠를 쓰는 방법 즉 디지털 서명을 창설하는데 쓰이는 비밀키(private key)와 디지털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 verify하는 공개 키(public key)에 의하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ISC 가이드라인은 초안형태로 널리 배포되었으며, 유타주가 처음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상당부분 참조하여 디지털 서명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 제 1초안도 동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부제 ‘認證機關 및 電子商去來에 관한 법적 기반’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電子商去來에서 필요한 디지털 서명 및 認證機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하에서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다.

ISC 가이드라인은 전문, 해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가이드라인 본문 부분은 「제 1 장 정의(Definitions)」, 「제 2 장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제 3 장 認證機關(Certification Authorities)」, 「제 4 장 등록자(Subscribers)」, 「제 5 장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Relying on Digital Signatures)」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이 IS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워싱톤 주 등에서 디지털 서명법(Digital Signature Law)이 제정된 상태이다.

(2) U.C.C. 제 2B 편 (초안)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제 2B 편은 현대의 상업 및 상사법에서 가장 활기충만한 분야 즉, 정보에 관한 거래를 다루고 있다. 제 2B 편은 U.C.C. 및 주

3) 室町正實·吉田一雄, “認證機關および電子取引に關する法的基盤の整備に向て”, NBL, No. 593(1996. 5. 15); America Bar Association,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1995.

법을 상사계약법의 주된 법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U.C.C.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객체를 주된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정보거래는 물품거래와는 거래객체를 달리한다. 그 가치는 무체물과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 상의 권리 중에 존재한다. 제 2B 편은 물품이 급격히 중요성을 잃어가는 경향을 반영하여, 미국의 계약법을 현대적 상거래, 특히 인터넷 기타 온라인 거래를 다루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계약법은 물품이 주된 거래객체가 되던 1950년대의 경제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변화하면서, 오늘날 서비스부문이 오히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보산업이 대부분의 제조업을 추월하고 있는바, 이것이 U.C.C.의 모든 개정조항, 특히 제 2B 편을 기초하는 전제이다.

지적재산권제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이 분야의 거래의 대다수는 단순한 제품의 인도가 아니고, 계속적인 라이선스 관계를 취급하므로 계약조항에 중요성이 주어진다. 이 점에서 정보거래는 물품거래와는 차별화 되는데, 예컨대 NY 타임즈를 온라인으로 보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자는 자신이 의자 등과 같은 제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U.C.C. 제 2B 편은 바로 이 차이를 다루고 있다.

제 2B 편의 전형적인 거래는 물품의 매매가 아니라 정보사용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룬다. 라이선스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하고 그러한 권리의 조건, 유보, 범위 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허락이라 함은 정보를 계약에 의거하여 사용, 복제, 개변하거나 정보에서 기타 이익을 얻을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제 2B 편에 있어서 재산권의 주된 원천은 저작권인데,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복제물을 배포하고, 파생적인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며,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실연할 배타적인 권리와 저작인접권을 향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 2B 편은 정보 컨텐트,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출판, 영화, 음반 기타 유사 저작권산업에 있어서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2B 편의 적용범위는 대상의 정의(예컨대, 디지털 정보 기타 정보)와 거래형태의 정의(예컨대, 매매와 비교되는 라이선스)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2B 편은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라이선스와 복제물의 매매를 포함하는 거래를 구별하고 있다. 제 2B 편은 모든 라

이선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관계없는 상표와 특히의 라이선스를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시키고 있다.⁴⁾

(3) 통일상법전 제 4A 편

1989년에 주법으로서 統一商法典(U.C.C.) 제 4A 편 「資金移替」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대부분 주가 이를 제정법으로서 채택하였다. 동 편은 巨額 EFT 去來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체에 관해 최초로 제정된 사법상의 제정법이다.

제 4A 편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기술적인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며, 다음 4개장은 중계은행이 관계하는 일정한 자금이체과정의 네 단계를 다룬다. 제 4A 편은 연방전자자금이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고객과 은행간, 은행상호간의 EFT에 대한 안전보호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조항은 거래상 합리성이 있는 약정된 안전보호절차를 이행한 경우 그 효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하여 수신은행 측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⁵⁾

3. 獨逸의 멀티미디어法

독일에서는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 사회의 발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의 이용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장래의 발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소위 멀티미디어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원격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署名法이라는 3개의 법률의 제정과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서의 배포에 관한 법, 저작권법, 가격표시법 등 6개의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는 음니버스법인 바, 이 중 디지털 서명법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후의 경제거래의 법적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4)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2B "Licenses", November, 1997.

5) 박진아, "미국의 기관간 자금이체법(U.C.C. 제 4A 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통신개발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 1997.

본 법에서는, 디지털署名에 대한 정의(제 2조), 소관관청(제 3조), 認證機關에 대한 면허(제 4조), 證明書의 發行(제 5조), 認證機關의 交시의무(제 6조), 證明書의 내용(제7조), 證明의 停止(제 8조), 文書化(제 10조), ディータ의 보호(제 12조), 當局의 監督(제 13조), 디지털署名의 기술적 구성요소(제 14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⁶⁾

디지털署名法은 디지털 서명을 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이 체계 하에서 디지털 서명이 확실하게 행해지고, 디지털 서명의 위치, 디지털 서명이 있는 디지털 정보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디지털署名法의 제안이유에서 자필 서명과 디지털 서명의 안전성을 비교하고 있다. 예컨대 자필서명도 스캐너에 의해 서명을 기억시킨 후 충실히 복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위조된 서명이 위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비해 디지털署名法에 의한 디지털 서명은 위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없는 위조로서는 서명키가 기억되어 있는 IC 카드가 비합법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고려되지만, 이것도 바이오 메트릭스를 사용한 본인확인에 의해 그 위험성을 최소화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 이루어진 정보에 대해서 재판할 때에는 법관이 높은 증명능력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디지털 서명과 관련해서 증명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4. 말레이지아의 디지털署名法

말레이지아는 1997년 디지털署名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디지털 서명 자체와 디지털 서명의 이용을 규율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본 법은 7개부 9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總則으로 略稱과 용어정의를 하고 있고, 제 2부 認證機關의 管理人과 認證機關의 許可, 제 3부 認證機關 許可의 要件, 제 4부 許可된 認證機關과 加入者の 義務, 제 5부 디지털署名의 效力, 제6부 保存場所와 타임스탬프 서비스, 제 7부 其他로

6)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June 13, 1997.

구성된다.

IV. 디지털署名과 認證機關

개방형 네트워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작성자·발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암호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디지털署名'이 종이에 기초한 去來의 서명·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형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없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去來에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시지상의 동일성확인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 그 신뢰성·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 3 자기관 즉, '認證機關'과 '제 3 자 受託者'의 설립의 검토가 필요로 된다. 일반적으로 「認證」이라고 해도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그 각각에 따라서 認證機關이 될 수 있는 주체도 달라지게 된다. 認證에 대해서는 그 인증이라는 행위가 법률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認證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며, 認證局과 인증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의 보안기능과 운영체제 등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다양한 認證이 고려되므로, 일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목적, 내용, 주체에 따라서 어떠한 認證制度로 발전시켜 나아갈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자유롭게 행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국제적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 나가면서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제도적 적합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C 가이드라인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ISC 가이드 라인은 제 3 장 「認證機關」 편에서, 認證機關의 의무로서, 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제 3-1 조), ② "認證實務準則(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공개할 것(제 3-2 조), ③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을 행하고, 등록자 및 인증기관의 증명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제 3-3 조) 등의 일반적 의무와 함께, ④ 등록자의 비밀 키를 보관할 경우의 책임(제 3-5 조), 각종의 기록보

존의무(제 3-6 조, 다만 구체적 보존기간, 보존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認證機關의 賠償責任에 관한 제 3-3 조이다. 동 조에서는 認證機關의 책임범위는 인증에 의거한 去來의 가액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동 조항과 제 2-3 조는, 수신자가 디지털 서명을 신뢰한 경우 증명서를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認證機關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에 기초해서 배상의무의 범위를 거래가액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認證機關의 認證實務準則 공개시 증명서를 이용하는 去來에 대하여 책임상한을 통지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한정방법이 인정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인정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認證機關의 과오에 따른 책임의 향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실무적으로 정착할 지 여부, 입법론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고려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8 조는, 認證機關의 증명표시사항으로서 수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認證實務準則에 따라서, (a) 認證機關은 가이드라인이 적용해야 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것, (b) 서명자는 증명에 기재된 공개 키에 대응하는 비밀 키를 사용하고 있을 것, (c) 서명자의 공개 키와 비밀 키는 한 쌍의 키일 것, (d) 증명을 위한 모든 정보는 정확한 것일 것(다만, 認證機關이 특정 정보의 정확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경우 제외) 등을 표시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에는 유효 일시 및 실효 일시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3-9 조). 이 표시에 의하여 認證機關은 표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규정은 認證機關의 責任範圍를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항 외에도 본 장에서는 공개 키의 登錄取消, 使用停止 등의 키의 취급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SC 가이드 라인 제 4 장 「登錄者」에서는, 키의 등록시 各種 義務(제 4-2 조), 비밀 키의 管理責任(제 4-3 조), 비밀키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通知義務(제 4-4 조) 및 이용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 5 장의 디지털 서명에 관한 증명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ESC 가이드 라인 제 5 장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의 제 5-1 조에서는

유효한 디지털 서명에 통상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제5-4조에서는 디지털 서명을 첨부한 메시지가 文書性을 충족시키는 점, 제5-5조에서는 디지털 서명된 메시지의 사본은 「原本」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다만 서명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메시지의 原本으로 하기를 의도한 경우에는 그것만이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 데이터의 署名性, 文書性, 原本性을 인정하려고 하는 國際聯合商去來法委員會의 電子商去來法 모델법안의 규정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船荷證券 등 權源證券의 EDI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권원증권의 EDI화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서명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현 단계에서 權限證券의 電子化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으로는 불완전하며 계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을 명기하고 있다(제5-7조).

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수신자가 디지털 서명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서명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등록자의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수신자가 알거나 통지 받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명의 효력에 관한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서명을 신뢰함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디지털 서명이 署名 또는 真正性確認(authentication)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고, 디지털 서명을 무시하기로 한 수신자는 서명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

이 중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제5-3조에 그 판단요소에 대한 예시가 있다. 즉, 이 합리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알거나 통지를 받은 사실, 디지털 서명된 메시지의 가치 또는 중요성, 상관습,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컴퓨터에 기초한 상거래관련 상관습 등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합리성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것은 美國 統一商法典 제4A 편의 입법취지와 거의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예컨대 수신자가 제3자가 디지털 서명을 도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동일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디지털 서명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또는 여기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제적 효력 부여와 추정적 효력 부여의 두 가지 방식이 고려되지만, 가이드라인은 제5-6조에

서 유효한 認證機關의 증명에 기재된 정보는 정확하다는 점, 유효한 증명에 기재된 공개키에 의해서 검증된 디지털 서명은 그 증명에 기재된 등록자의 디지털 서명인 점, 認證機關에 의해서 디지털 서명되고, 그 증명에 기재된 등록자에게 配送된 증명은 해당 認證機關에 의해서 발행되고 해당 受信者에 의해서 受信된 점, 디지털 서명은 타임스탬프되기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증가능한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ISC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의 이 추정적 효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며, 디지털 서명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메시지의 작성자가 디지털 서명자인 것으로는 추정되지는 않는다.⁷⁾

V. 電子契約

1. 契約自由의 原則의 適用

UNCITRAL 모델법은 원칙적으로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계약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4조에서 제1부 제3장이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지배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경향은 U.C.C. 제2B 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電子商去來에 대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적용은 앞에서 기술한 電子商去來의 부합계약성을 가져오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자유만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2. 電子契約成立上의 問題

(1) 契約의 成立 時期

電子商去來를 격지자간의 去來라고 전제하는 경우, 성립의 시기는 承諾이

7) 室町正實·吉田一雄, 前掲書; America Bar Association, 前掲書.

發信된 경우로 된다(민법 제531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契約法상의 承諾에 해당하는지, 발신된 승낙의 통지가 請約者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유가 통신회선의 장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發信主義가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또한 한번 送信되면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電子商去來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송신된 데이터의 撤回 또는 變更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거래형태를 유형화하여 각 경우마다 그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전자 데이터의 到達時期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데이터의 效力發生時期와 관련된 학설에는 到達主義와 發信主義(발송한 시점)가 있는 바, 민법(제111조)을 비롯한 각 단행 법률에서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망에 의한 정보의 전달 체제는 도달·발신의 시간상의 차이가 없다. 즉, 전자 매체는 발신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전자 데이터가 자신의 단말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회사의 LAN내에 있다면, 아직 발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송신 상대방과의 사이에 VAN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당사자가 먼저 수신·수신의 정의에 대해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關稅法에서는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통지 등이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후 통상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 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관세법 제242조의 6). 貿易自動化法에서는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를 도달 시점으로 보고 있어, 관세법의 도달 시기보다 약간 빠르다고 볼 수 있다.

UNCITRAL 電子商去來 모델法에서는, 그 심의 초기 단계에서 도달주의를 명기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도달주의 원칙이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⁸⁾

(2) 表意者의 特定(表見代理 포함)

電子商去來에서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가

8) 内田 貴, 前揭書; 통신개발연구원, 前揭書; 한국무역협회,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방향”, 1997.

장한 타인에 의해서 본인이 행한 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상 表見代理가 어느 정도 인정될 지 문제된다.⁹⁾

UNCITRAL 모델법 제 13조는 電子 데이터의 歸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作成者 또는 그 代理人 또는 電子代理人에 의하여 전자 데이터가 송신된 경우,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있어서는 그 전자 데이터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며, 전자 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이용한 경우, 제 3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자 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자가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ID 등의 도용)하여 전자 데이터를 발송하고, 그 제 3자로부터 수신자가 전자 데이터를 수신하더라도 수신자는 전자 데이터를 作成者의 것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단, 受信者가 作成者로부터 당해 전자 데이터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그 전자 데이터와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 내에 통지 받은 경우, 수신자가 약정된 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전자 데이터를 작성자가 送信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意思表示의 瑕疵(무결성(integrity) 포함)

또한 錯誤, 詐欺, 強迫에 의한 契約의 無效 · 取消 등의 계약법 규정이 電子商去來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간단한 입력실수(錯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錯誤의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의 입력실수(表示行爲의 错誤) 등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 바, 錯誤의 立證에 성공한 경우에 이것을 모두 錯誤로 인한 取消로 구제하는 것은 電子商去來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문제된다. 이 경우, 이용자 측의 실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 구체적 상관행의 형성을 도모하고,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重過失로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¹⁰⁾

9) 日本通商産業省, 前掲書; 内田 貴, 前掲書.

10) 日本通商産業省, 前掲書; 内田 貴, 前掲書.

3. 相換性의 保障(同時履行, 商品·서비스의 引渡와 代金支給간)

電子商去來의 있어서 상품·서비스의 인도와 대금지급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전자적 방법의 대금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금이 이체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상품·서비스의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및 디지털 컨텐츠 등 상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인도되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문제로 된다.

4. 國際電子契約의 準據法

電子商去來,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去來는 거의 국경이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去來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가 문제된다. 현행 國際私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정하는 約款과 사업자 서버의 소재지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準據法이 선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消費者保護法, 製造物責任法 등이 국경 없는 인터넷 상에서의 去來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법이 바람직할 것인가가 아니라 법률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強行法規의 特別連結論 등을 사용하여 消費者保護法의 적용을 확보하면 완료되는 문제는 아니다.¹¹⁾

U.C.C. 제 2B 편은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동편은 두 가지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1) 契約上의 選擇의 強行

U.C.C. 제 2B 편은 準據法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準據法의 선택에 관하여 판례의 대부분은 계약에 의한 선택을 지지하고 있다. 보통법은 일반적으로 무체물을 포함하는 거래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準據法의 선택을 강행하고 있다.

11) 內田 貴, 前揭書.

(2) 契約條項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안정적 결정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 미숙한 계약당사자의 경우, 준거법 선택에 관한 계약 조항을 두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準據法의 선택원칙은 혼란에 빠진다. U.C.C. 제 2B 편은 온라인 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영세한 밴더와 소규모의 상인이더라도 자신의 거래행위를 다루는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거래 기타 유사거래에 있어서, U.C.C. 제 2B 편은 온라인 계약에서 라이센서의 소재지를 기초로 하는 준거법선택의 추정원칙을 성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정원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온라인의 밴더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판매활동을 하는 때에 미국 50개 주와 세계 170개 이상 국가의 법률에 따른 것을 요구받게 된다. 준거법선택의 추정원칙에서 라이센서의 소재지란 그 정보를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컴퓨터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이 규칙은 이와 상반하는 소비자규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기타 경우에 있어서, U.C.C. 제 2B 편은 Restatement(제 2판)의 접근 즉,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판정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VI. 知的財產權의 保護와 活用

1. 知的財產權의 保護와 利用間의 均衡

知的財產權法은 創作者의 權利의 保護와 公衆의 利用간의 均衡 유지를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이고 완벽한 복제능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결합은 정보기술이 그토록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 知的財產權法 관련 체계에 대해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知的財產權의 侵害은 아주 쉽게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는 知的財產權使用者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

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지금 創作者의 權利와 使用者의 權利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知的財產權問題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2. 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保護

디지털 처리를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전송망이 구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와 질 높은 정보의 컨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디지털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3. Domain Name의 保護

기존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명의 사용이 商標權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도메인명 사용을 둘러싸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현실화되고 있다. 商標法은 商標權者에게 登錄商標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商標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명을 사용해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것은 서비스 마크의 사용(商標의 사용과 동일)에 해당하고, 禁止請求와 損害賠償請求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商標는 일정 국가 또는 그 중 특정지역에서 유효하지만, 인터넷 도메인명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사업체가 여러 국가에서 동일 또는 관련 재화·서비스에 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登錄商標를 소유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어떤 미국기업이 미국내에서 퍼스널 컴퓨터용 특정 마크의 제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편 유럽의 어떤 기업이 동일 마크를 유럽내에서 동일제품용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미국 기업이 인터넷 상에서 그 마크를 도메인명으로서 국제적으로 사용한 경우, 유럽 기업의 登錄商標權의 침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도메인명만은 아니고, 전자메일 어드레스에 대해서도 유사상표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자메일 어드레스는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교적 특징없는 도메인명 예컨대, 'king.com'을 등록한 이상, 전자메일 어드

레스를 'burger@king.com'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메인명의 배정 시 유사상표의 조사에 상응하는 절차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이와 같은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시 된다.

따라서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電子商去來에 관한 새로운 대응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

4. 著作權 關聯問題

한편 電子商去來에 관련하는 著作權 問題로서는 (1) Person to Person, 메일링 리스트,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한 送信과 著作權法 상의 ‘放送權’ 등의 관계의 정리, (2) 이러한 권리에 관한 “一般公衆” 개념의 정리, (3) 去來 행위를 매개한 네트워크 제공자의 民事責任 問題 등, 실무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WIPO(世界知的財産權機構)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체결된 것이 新著作權條約이다. 또한 電子商去來에 관련하는 著作權 問題로서 市場進入 · 宣傳廣告라는 관점에서 선전용 홈페이지에 관한 사적 복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네트워크상 WWW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에 포함되는 텍스트 및 그래픽 부분은 각각 言語著作物, 美術著作物 내지 寫眞著作物 등에 해당하고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著作物이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 등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각 사용자의 단말기 메모리에 순간적으로 축적됨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상 표시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유의사로 검색이 행해지고,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이용자의 단말기 상에도 홈페이지로 나타나게 된다. 홈페이지의 자유로운 열람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홈페이지의 단순한 화면으로의 표시가 著作權法에서 말하는 ‘複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12) 日本通商產業省, 前揭書; 内田 貴, 前揭書.

13) 日本通商產業省, 前揭書; 内田 貴, 前揭書.

VII. 電子商去來와 公法的 問題

1. 電子商去來와 稅法

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기술은 정보고속도로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을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신기술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로서 실질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신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課稅管轄權을 가지는가를 특정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가상공간의 去來에서는 소득원천지에 기초하여 과세(source-based taxation)되는 전통적 방식이 지양되면서 거주지에 기초한 과세(residence-based taxation)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된다. 또한 國際電子商去來에 있어서의 課稅問題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세법이 미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¹⁴⁾

2. 電子商去來와 勞動法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함을 전제로 하는 현행 勤勞基準法 등은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 된다. 정비의 대상이 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勤勞時間管理이다. 재량근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의 경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관리는 텔레워크의 이점을 손상시킬 수 있다. 둘째, 安全衛生 · 勞動災害이다. 사무노동의 경우, 심각한 사례는 적을지 모르지만, 자택과 사업장외의 작업장 환경, 노동재해 · 통근도중의 재해 등을 둘러싸고 실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就業規則의 整備이다. 사업장외 노동을 염두에 두고 취업규칙을 적절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임금형태, 실적평가, 균등대우 등이 문제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법 자체의 변경보다는 그 적용의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텔레워크의

14)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Tax Policy in U.S.A.,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November, 1996.

보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集團勞動關係法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¹⁵⁾

3.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法

거래안전의 보호는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하여 요구되는 것이며, 현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등의 소비자보호규제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최근 통신판매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민간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적 규제가 전무하다. EU의 경우에는 1995년 7월 24일에 “개인데이터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당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령”을 채택하였다. 지령의 목적은 EU 가맹국이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자연인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에 있다. 인터넷의 보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정보의 유통이 증대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가맹국은 지령 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공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VIII. 新로운 法體系의 必要性

財產法은 크게 物權法과 債權法의 2대 부문으로 나뉘고, 역사적으로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먼저 발달하였다.

物權의 客體와 관련하여, 우리 民法 제 98 조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15) 言取訪康雄, “コンピュータネットワーク-テレワークの實現と労動法の課題”, ジュリスト, No. 1117(1997. 8. 1~15).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物權의 客體를 “物件”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著作權·特許權 등과 같은 無體財產權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정보와 기술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物權法이 물건의 범주에 정보와 기술 등 지적재산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기술위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데 큰 제도적 장애가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소유권은 항상 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단일대상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有體·無體財產權을 포괄하는 所有權 概念을 재정립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입장례로는, 물권의 객체에 有體物뿐만 아니라 널리 無體物을 포함하는 프랑스 민법이나 오스트리아 민법을 들 수 있다.

IX. 結論

- 國內 電子商去來法制度 現況 및 問題點 -

현재 국내 電子商去來 관련 법률은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을 비롯해 「工業 및 에너지 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電算網普及擴張 및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貨物流通促進法」 등이 있으며 20여개 법률에 電子署名, 電子文書의 效力, 電子文書의 效力發生時期, 到達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이 電子商去來法에 관한 국제적 조류와 조화를 이루고, 현재 電子商去來로 이행함에 따른 제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며, 여러 개별 법률들 안에 EDI와 관련된 규정들이 산재해 있고 그 용어들도 일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빠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商去來란 기본적으로 종래의 종이에 기초한 거래와 달리 네트워크 상에서 의사전달을 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거래방식과는 전혀 다른 바탕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子商去來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관행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법률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電子商去來에 대한 基本法의 制定이 필요하게 된다. 동 법 안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거래행위에 사용될 디지털 테

이터에 대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정립과 통신망 상에서의 데이터의 安全性, 사용자들의 匿名性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電子商去來·決濟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소비자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電子商去來基本法의 제정 및 동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일반인들의 電子商去來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電子商去來를 하나의 商去來로서 확립해 나가기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함에 긴요하리라 생각된다.